

#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예산개요

### 1. 세입예산

■ 2018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최종 예산대비 3.9% 감액된 6억1천4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639,086	614,200	△24,886	△3.9
세외수입	15,109	22,137	7,028	46.5
경상적세외수입	3,063	3,787	724	23.6
재산임대수입	3,063	3,359	296	9.7
이자수입	0	428	428	
임시적세외수입	12,046	18,350	6,304	52.3
기타수입	12,046	18,350	6,304	52.3
보조금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 감	증감률(%)
계	639,086	614,200	△24,886	△3.9
경상적세외수입	3,063	3,787	724	46.5
재산임대수입	3,063	3,359	296	23.6
공유재산임대료	3,063	3,359	296	9.7
이자수입	0	428	428	
기타이자수입	0	428	428	
임시적세외수입	12,046	18,350	6,304	52.3
기타수입	12,046	18,350	6,304	52.3
시·도비반환금수입	10,369	18,350	7,981	77.0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등	623,977	592,063	△31,914	△5.4
국고보조금	623,977	592,063	△31,914	△5.4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8년 세출예산은 38억 1천 3백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4억 6천 4백만원 대비 10.1% 증액된 수준이며, 2017년도 간주처리 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34억 9천 7백만원 대비 9.1%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 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3,464,729	3,813,215	348,486	10.1	
행정관리	소 계	3,464,729	3,813,215	348,486	10.1
	행정운영경비	153,487	156,307	2,820	1.8
	재무활동	700	300	△400	△57.1
	사업비	3,310,542	3,656,608	346,066	10.4
교 부 금	0	0	0	0	

○ 2018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7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7 예산		2018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464	3,496	3,813	349	10.1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305	305	306	1	0.4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51	51	239	188	368.7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 리	34	34	4	△30	△88.3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21	121	121	0	0
예비군 육성·지원	347	347	350	3	0.9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	63	63	0	0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35	235	220	△15	△6.4
사회복무요원 관리	562	562	704	142	25.3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3	45	0	△13	△100
민방위교육운영비	628	630	667	39	6.3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 비	31	31	31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7	127	127	0	0
민방위교육장 운영	176	176	170	△6	△3.5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	48	50	0	0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38	38	38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29	529	566	37	7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153	153	156	3	2
재무활동(반환금및기타)	1	1	1	0	0

## II. 검토의견

### 1. 세입예산 검토

#### 세외수입

전년대비 7백만원 증액(46.5%)된 2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공유재산임대료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에 따른 수입으로 구내매점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에 대부료율 5%<sup>1)</sup>를 반영하여 3백만원(전년도 3,06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8년에는 3개년 계약을 새로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입찰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최고가 낙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향후 입찰공고 및 적정계약을 통한 세입확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임대료 산출내역 : 335만 9천원

- 세입전망 : 점유 건물 및 토지 가액의 5%
- 산출방식 : 건물 시가표준액 7,035,956원+ 토지 개별공시지가 60,152,360원)×5%

#### 〈최근 3년간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료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징수예정)
징수액	1,725	3,085	3,085	3,06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 기타이자 수입

- 전년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 평균액인 4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처리 해오던 것을 2017년부터 ‘그외 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2018년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목을 변경한 바, 적기 반환을 통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시·도비 반환금수입

- 전년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수입으로 2018년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최근 5년 평균(최저 13년도분 제외) 시비보조금 반환률(2.65%)을 반영하여 1천8백만원(전년도 1,036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여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연도별 시도비반환금 예산 대비 징수실적

(단위: 천원)

세입처리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추계
예 산 액	8,168	8,734	8,345	10,367	10,369	18,350
시도비반환금(결산액)	11,145	3,501	24,248	15,227	22,140 (징수예정액)	-

## ■ 그외수입

- 민방위교육장 매점 공공요금 등에 대한 수입으로 2017년까지 그외수입으로 편성(1백6십7만7천원)하였으나, 2016년 8월부터 매점 전력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매점 운영자가 고지서로 스스로 납부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공공요금 발생 사유가 소멸된 바, 2018년도에는 세입을 미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sup>2)</sup>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교부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5억9천2백만원(전년 대비 △5.4% 감액)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28,000천원 감액)’,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38,000천원 감액)’, ‘민방위교육운영비(16,836천원 증액)’,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2017년과 동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17,250천원 증액)’ 등으로 2017년도 교부액 대비 3천 1백만원 감액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교부부처	세부사업명	2017년 (총액)	2018년 (총액)	증 감 (총액)
합 계			623,977 (1,269,094)	592,063 (1,268,837)	△31,914 (△257)
국 고 보조금	행 정 안정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28,000 (34,165)	0 (4,450)	△28,000 (△29,715)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38,000 (45,000)	0 (0)	△38,000 (△45,000)
		민방위교육운영비	299,527 (629,954)	316,363 (667,037)	16,836 (37,083)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30,875)	14,250 (30,875)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44,200 (529,100)	261,450 (566,475)	17,250 (37,375)

2)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 ※ 주요 감액 내역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2천8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이는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총무훈련을 2018년에 실시 예정인 바, 전액 국비인 ‘총무훈련 보상금’에서 직접 집행할 예정에 따른 것이며,
-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는 2017년도 실시한 1회성 행사비로서, 2018년에 전액 감액된 것임(행정안전부 가내시 미통보).

##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3억6백만원) 사업 등 전년도 당초 예산(34억6천4백만원) 대비 10.1%(2017년도 간주처리 예산을 감안한 최종예산 34억 9천 7백만원 대비 9.1%) 증액된 38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2억3천9백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4백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1억2천1백만원), ‘예비군 육성·지원’(3억5천만원),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6천3백만원),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2억2천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7억4백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6억6천7백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3천1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1억2천7백만원), ‘민방위 교육장 운영’(1억7천만원),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5천만원), ‘민방위장비 보급 확충’(3천8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5억6천6백만원)

### 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에 따른 국지도발 대응연습과 전시전환 및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서울시민의 안보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17년 대비 0.1% 증액된 3억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중 ‘통제부 및 종합상황실 상황관 제작’ 비용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통합상황실 디지털화를 위해 2018년 1억8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통합방위상황실에 DID시스템<sup>3)</sup> 등을 설치할 예정인 바,  
 중복적인 사업예산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지양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을지연습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사업 성격상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국비보조를 위한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을지훈련과 관련하여 형식적, 전시성 행사를 비난하는 언론 보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바, 시민 전투식량 체험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민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나.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은 관계법령(「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에 전적지 견학 및 안보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후세대에게 6.25전쟁 등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 안보의식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2017년 대비 6.3% 감액된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지원 예산의 경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1억8천만원 × 1식’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 심의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

3)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 공공정보 게시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총칭한다.



- 시민 안보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기존의 전례답습적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후세대 의식변화에 호응할 수 있는 안보의식 함양 콘텐츠 개발에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2017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전용카드 결제비율이 저조한 바, 총 집행액(1억4천백만원) 중 인건비(1,100만원)를 제외한 집행액(1억2천9백만원)은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2017년 상반기 정산결과 카드 결제비율(4천6백만원, 35%)이 관련 지침(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70%)에 미달하는 바, 향후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결제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의 철저한 관리·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향군 안보포럼’ 사업과 관련하여 토론자 모두가 발표 및 토의 시 편향된 안보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참석 대상자 또한 재향군인회원만으로 구성되는 등, 이념편향성 극복 및 정치적 중립 준수와, 참석대상자 다양화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비상기획관은 고액의 시비 보조금(2억2천만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사용처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후세대 전직지 견학 148,500,000원*1식 = 148,500천원	○ 전후세대 전직지 견학 <b>180,000,000원*1식</b> = 180,000천원
	○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30,000,000원*1회 = 30,000천원	○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20,000,000원*1회 = 20,000천원
	○ 향군 안보포럼 9,000,000원*3회 = 27,000천원	○ 향군 안보포럼 10,000,000원*2회 = 20,000천원
	○ 나라사랑 안보교육 29,500,000원*1식 = 29,500천원	
	나라사랑 안보교육 폐지	

## 다. 사회복지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병역법<sup>4)</sup>」에 따라 병역의무자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사업소 포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의 관리 및 복무자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5.3% 증액된 7억4백만원(전액 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주된 증액 요인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의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복무요원 평균 기본급이 2017년 19만6천원에서 2018년 36만6천원으로 86.7%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2017년 대비 70.0% 증액된 4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임.
- 현재 시·사업소 근무 사회복지복무요원은 554명으로 그 중 일반행정지원 분야 100여명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5억4천6백만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회복지복무요원 관련 예산은 근무장소 및 성격에 따라 각 특별회계 또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2017년 11월 3일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sup>5)</sup>이 발의된 바, 서울시도 정부의

4)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지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③ 사회복지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5) 제안이유 : 이는 2015년 병영판정신체검사 규칙 개정으로 보충역 판정인원이 2배이상 늘어났으나, 소집 인원은 늘어나지 않아 대기인원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복무요원 봉급이 인상될 경우 복무기관에서 사회복지복무요원을 줄이고자 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게 하고자 함.

장병 복무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요원 봉급 인상으로 인해 재정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 법률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급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사업소 사회복지요원 현황〉

(단위 : 명)

기 관 명	2017년	복무분야	기타
합 계	531		
본 청	23	일반행정지원	서울시예산
동 부 도 로 사 업 소	12		
남 부 도 로 사 업 소	9		
북 부 도 로 사 업 소	14		
서 부 도 로 사 업 소	4		
성 동 도 로 사 업 소	9		
강 서 도 로 사 업 소	11		
중 랑 물 재 생 센 터	16	행정기관경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광 암 아 리 수 정 수 센 터	8	환경보호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 의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1		
뚝 도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9		
영 등 포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4		
암 사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5		
강 북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0		
서 울 물 연 구 원	3	일반행정지원	서울시예산
어 린 이 병 원	2	환자구호업무	보건복지부 국비
은 평 병 원	36		
서 북 병 원	18		
동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46	환경보호감시	산림청 국비
서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50		
중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33		
한 강 사 업 본 부	40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7	일반행정지원	서울시예산
서 울 역 사 박 물 관	2		
한 성 백 제 박 물 관	2		
서 울 도 서 관	2		
서 울 시 립 대 학 교	12		
소 방 재 난 본 부	116	재난안전관리	국민안전처 국비

※ 시·사업소 근무 사회복지요원 554명중 일반행정지원 분야 100명 서울시예산 편성

## 라. 민방위교육 운영비

- “민방위 교육 운영비” 예산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통한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민방위훈련, 민방위리더 양성 비용 등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분담 예산으로 2017년 대비 5.9% 증액된 6억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연간 2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민방위대 교육과 관련하여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특정 강사에 대해 교육기회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강사의 편성에 있어서 강의기회가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개선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350에서 357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의 횟수가 가장 많은 강사는 '17년 9월까지 162회 강의하고 1,662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반면, 강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강사가 8명에 달하여, 다양한 강의를 실시되도록 강사간 편중되지 않은 강의시간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조치를 받은 바 있음.

-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의 듣기 민망한 저속한 표현이나,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하여 꾸준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던 바, 대학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폭 넓은 강사를 초빙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민방위기본법<sup>6)</sup>」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 및 구비 매칭(3 : 3.5 : 3.5)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역민방위대 방

6)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독편을 구매하여 자치구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7% 증액된 5억6천6백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당초 연간 2만5천개 구매 목표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23,000개, 2016년에 22,000개, 2017년에 19,400개를 구매하였고, 2018년에도 20,800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방독면 구매 단가 인상과 2017년 확보율이 29.2%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독면 확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7,000원*22,000개*0.65 = 529,100천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42,000원*20,750개*0.65 = 566,475천원

〈 방독면 확충 내역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	25,000개	25,000개	22,000개	20,750개
달성	23,426개	22,012개	19,380개	추진예정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